

의안번호	2213728
의 퇴 인	윤영석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계번호	25E571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
및 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수익 등 제외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증가는 2027년 1조 5,280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8조 3,644억원(연평균 1조 6,729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교육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세율 조정(안 제5조제1항)	15,280	16,079	16,735	17,419	18,131	83,644	16,72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율)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 - (현행)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율 0.5% 부과 - (개정안)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중, 1조원 이하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 0.5% 및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1.0% 부과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0.5% 적용. 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 수익 등 제외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율)	○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조정에 대해 추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한 단일세율 부과, 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 수익 등의 과세표준 제외 등은 관련 산정에 합리적 예측이 어려운 이유로 미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고, 교육세 신고·납부 기간을 감안하여 징수기준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을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는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 수입의 향후 증감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
 - 동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명목GDP, 국고채3년물 금리 등) 전망(2025.9.) 활용
- 개정안 내용 중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한 단일세율 부과, 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 수익 등 제외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합리적 예측이 어려운 이유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해 단일세율(0.5%)를 부과하고, 우대수수료 관련 수입,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등은 제외
 - 우대수수료 관련 수입 등의 정보가 현재 미공개되는 가운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의 경우¹⁾, 관련 업체수, 매출액 및 수수료 수입규모 등은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개별 금융·보험기관 단위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대수수료 수익 등에 대한 합리적 예측에도 한계가 있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9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금융·보험업자에는 정부투자금융기관²⁾ 및 민간금융기관³⁾이 있으며(「교육세법」 제3조 및 별표), 동 기관의 이자수입,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0.5%) 부과
 -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신고액은 2024년 1조 9,878억원 등 최근 4년간 증가 추세

[표 2]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신고액 추이: 2021~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¹⁾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11,933	12,733	15,480	19,878

주: 1. 정부 잠정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2) 추계 방법

- 2024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뒤,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 수입의 향후 증감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 추계
- (2024년 기준 세수효과) 개별 금융·보험업 교육세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1조원 초과와 1조원 이하의 경우를 구분하여 추계

2)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 일반은행,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수협, 집합투자업, 신탁업, 환전영업, 투자매매·중개업, 여신전문업, 대부업

[표 3]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관련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 및 세수(신고액) 비교: 2024년 기준

과세표준 합계(조원)			세율(%)		신고액(억원)		세수효과 (억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조원 초과	[1조원 초과 구간]	266.0	0.5	1.0	13,300	26,600	13,300
납세자	[1조원 이하 구간]	60.0		0.5	3,000	3,000	0
1조원 이하 납세자		71.6		0.5	3,578	3,578	0
합계		397.6			19,878	33,178	13,300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 신고액 1조 9,878억원 중,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한 금액은 3,578억원며,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한 금액은 1조 6,300억원
 - －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금융·보험업 교육세 납세자에서는 세율변화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미발생
 -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납세자)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3,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 －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세율변화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추계
- (추계기간 세수효과) 2024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 1조 3,300억원에 대해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 수입의 향후 증감률 전망치 적용
- 2025년 3.7%, 2026년 4.9%, 2027년 5.6%, 2028년 5.2%, 2029년 이후 4.1% 등 증가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증가는 2027년 1조 5,280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8조 3,644억원(연평균 1조 6,729억원)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교육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세율 조정(안 제5조제1항)	15,280	16,079	16,735	17,419	18,131	83,644	16,72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